

(재)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(부지)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9-100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(재)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가 설립 자본의 54.2%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, 지역 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된 안산시 소재 대표적 기업 입주 시설임.
-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안산에 유치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주여건 개선은 필수적인 상황이나,
- 경기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부지 무상 사용을 통해 입주기업의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, 기업 혁신과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- 또한 전국 19개의 테크노파크 중 경기테크노파크만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,
- 이에,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 부지(상록구 해안로 705 / 66,652.13㎡) 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법적근거

-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7조

주요내용

○ 공유재산(부지) 유상 사용현황

- 사용기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
- 위 치 :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(66,655.9㎡)
- 허가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 (2년 유상)

※ (사용료) 2025년 : 443백만원 / 2026년 : 472백만원 (부가세 10% 별도)

○ 공유재산(부지) 사용 경과

기간	부지 소유	사용료	사용료 지 원	비 고(사용료는 공시지가에 1% 적용)
1998. ~ 2011.	한양대	무상	X	- 설립일('98.9.17.)부터 약 13년간 무상임대
2012. ~ 2019. 6.	한양대	유상	O	- 안산시에서 사용료 일부 지원 (2014 ~ 2019, 연간 약 100백만원)
2019. 6. ~ 2026.	안산시	유상	X	- 한양대로부터 부지 매입(2019. 6. 28.) 후 사용료 지속 부과

○ 사용료 면제 계획

- 사용기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
- 면 적 : 66,652.13㎡ ※ 전기차 충전시설 유상 사용허가 부지(3.77㎡) 제외
- 무상 사용허가 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- 2027년 감면 예상액 : 497백만원 (부가세 10% 별도)

* 임대료 : 공시지가 × 토지면적 × 10/1000 (부가세 10% 별도)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2】

※ 비용추계서 첨부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3】